

##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01. 22.  
13차 개정 2023. 0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학칙 제3조에 따라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및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과(부) 및 학부 내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단위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 및 소속 단과대학 변경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제2조(정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조정’(이하 “구조혁신”이라 한다)은 단과대학 및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신설’은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과폐지’는 학칙 제3조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에서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이 삭제됨으로써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학과통합’은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원조정’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전공변경’은 학과폐지 후 학과신설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학과 명칭변경을 말한다.
6. ‘명칭변경’은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학과명칭의 변경을 말한다.
7. ‘소속 단과대학 변경’은 교육편제 조정으로 학과의 소속이 다른 단과대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8. ‘학과평가’는 구조혁신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과 경쟁력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2.09.14)

**제3조(구조혁신의 원칙)** 구조혁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 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5. 대학의 평가지표 향상 및 교육부 평가 대비를 위한 조정

**제4조(구조혁신의 절차)** ① 구조혁신은 기획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04.20)

- ② 구조혁신은 매 학년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처장은 구조혁신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 부서장과 단과대학장, 해당 학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 ④ 구조혁신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처장은 학과의 자발적 구조혁신 의견, 학과평가 결과, 대학 특성화 방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구조혁신 계획안을 도출한다. 단,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2.09.14)
  2. 대학구조혁신위원회 심의

3. 교무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5. 이사회 승인
6. 기타 필요한 절차

**제5조(위원회)** ① 구조혁신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구조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구성은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18., 2022.04.20)
- ③ 위원회 위원은 구조혁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02.18)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구조혁신의 기준)** ① 학과신설은 특성화 분야, 지역사회 연계 분야, 수요자 선호 분야 또는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 육성 분야로 한다. (개정 2022.09.14.)

- ② 삭제 (2022.09.14.)
- ② 구조혁신을 위하여 학과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1>을 적용한다. (개정 2022.09.14)

**제8조(구조혁신 대상 학과 선정)** ① 구조혁신 대상 학과는 <별표1>에 의거 선정한다. (개정 2022.09.14)

- ② 학과평가 및 구조혁신 기준은 <별표1>을 적용한다. (개정 2022.09.14)

**제9조(구조혁신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구조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에 대하여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한다. (개정 2021.03.05., 2022.09.14)

- ② 삭제 (2022.09.14.)
- ③ 삭제 (2022.09.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입학정원 모집유보를 포함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14., 2023.02.21)

③ 제1항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9.14.)

④ 제2항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에 관해서는 교육부 고시를 준용한다. (신설 2023.02.21.)

**제9조의2** 삭제 (2022.09.14.)

**제10조(우수학과에 대한 지원)** 제8조 제2항의 학과평가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증원), 교원 충원, 특성화 학과 선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배정, 특별예산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11조(폐지된 학과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에 의한 학과폐지, 학과통합의 경우와 대학 정책에 따라 다른 학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교원에게는 교내연구비, 연구년제 및 연수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조혁신에 따라 소속 학과가 없어진 교원의 경우 소속변경,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되,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05.)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9, 2014.1.22)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37, 2015.7.2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33, 2016.05.02)

이 규정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3, 2017.06.23)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9, 2019.02.1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3, 2020.03.20)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담-310, 2020.05.04)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담-16, 2021.01.13.)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03.05.)

**부칙** (기획예산담-156, 2021.03.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의 구조혁신 조치는 2022학년도(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 구조혁신 특례조치는 2021학년도(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부터 적용한다. 단, 제9조의2 제2항은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부칙** (기획예산담-109, 2022.02.18.)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담-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담-5264, 2022.09.14.)

이 규정은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담-337, 2023.02.21.)

이 규정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2.09.14.)

## 학과평가 및 구조혁신 기준

### 1. 학과평가 지표 : 최근 학년도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text{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 \text{정원내 입학자} \div \text{정원내 모집인원} \times 100$$

※ 이하 <별표1>에서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은 위 계산식을 적용함

### 2. 학과평가 결과 활용

(1) 평가등급별 비율(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A	B	C	D	E
15%	20%	45%	15%	5%

(2) 평가등급별 구조혁신 조치

A	B	C	D	E
-	-	구조혁신 권고	구조혁신 시행	구조혁신 시행
			학과폐지 정원조정(감축)	학과폐지

(3)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60% 미만의 경우 (1)항~(2)항의 평가등급과 무관하게 E등급에 해당하는 구조혁신을 시행함

### 3. 학과평가 제외 학과

구분	학과평가 제외 범위
신설 학과	학과통합 없는 순수 신설 학과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과
교육부 승인 학과	입학정원 조정 시 관할청(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학과

※ 필요한 경우 학과평가 제외 학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구조혁신을 권고·시행할 수 있음

4. 구조혁신 조치 제외 학과(학과평가 대상에는 포함)

구분	구조혁신 조치 제외 범위
신입생 충원율 기준 충족 학과	신입생 충원율 80% 이상 학과
잠정배정 증원 학과	학과 정원기준(50명)을 초과하여 잠정배정(증원)한 학과로서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학과
자발적 구조혁신 학과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과폐지 의견을 제출한 학과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과통합 의견을 제출한 학과 중 별도의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과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학과
특성화 학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따 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과

※ 필요한 경우 구조혁신 조치 제외 학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구조혁  
신을 권고·시행할 수 있음